

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8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구미시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에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소비자의 역할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3조)

나. 시민생활의 안정대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다.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- 소비자 보호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
- 소비자단체 육성지원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비자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2018년 예산에 64,340천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,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비자의 역할)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.

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
2.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

3.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

4.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

제4조(위해의 방지)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·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시민생활의 안정대책)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 중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물가정보 수집·제공을 위하여 구미시 유급물가모니터(이하 “물가모니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으며, 그 운영을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물가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가모니터의 운영, 위(해)촉,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공정거래질서의 확립)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

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소비자교육 등)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8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구미시에 소재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소비자 보호 및 교육사업

2.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·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

② 시장은 법 2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소비자단체의 업무) 소비자단체의 업무는 법 제28조에 따른다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보호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미시 물가모니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구미시 물가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유급물가모니터로 본다. 이 경우 구미시 물가모니터의 위촉기간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점부터 산정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소비자기본법」

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.

1.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·폐지
2.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
3.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
4.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·육성

제29조(소비자단체의 등록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.

1.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
2.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
3.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추는 것
4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

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32조(보조금의 지급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□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

제3조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1.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
2.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
3.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·권고·공표 등
4. 소비자단체·소비자생활협동조합(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 소비자의 조직 활동 지원
5.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·운영 등
6.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
7.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·육성하여야 한다.

1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·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의2(보조금의 범위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소관 실·과		과학경제과
입 안 자	과 장	주 광 하
	담 당	권 미 영
	담 당 자	류 연 순 (480-6183)